

가스배상책임공제 약관

2020. 01. 01.



한국교육안전공제회

The Korea Education Safety & Mutual Association

목 차

1. 가스배상책임공제	1
2. 회와 보험회사의 책임범위	6
3. 후유장해등급별 지급공제금액	13

가스배상책임공제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공제계약자(이하 ‘ 계약자’ 라 합니다)와 공제회(이하 ‘ 회’ 라 합니다) 사이에 공제계약자의 가스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계약자가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제계약에서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본회의 회원기관으로 “ 유아교육법 제2조,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 “ 교육부,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 이어야 합니다.

제3조(공제계약의 성립)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공제회의 승낙은 회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단체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회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정기가입의 경우 공제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② 수시가입의 경우 공제기간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회의 승낙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영위하는 사업명세(가스 종류, 취급품목, 시설 용량 규모, 매출액, 시설능력, 처리능력)와 허가받은 사업을 반드시 공제계약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에 알리고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거나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공제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10조(회와 보험회사의 책임범위) 내 제9조(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계약의 무효) 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공제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자와 맺고서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0조(회와 보험회사의 책임범위에 대한 규정) 회는 보험회사와의 가스배상책임 보험 단체계약 및 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가스배상책임공제를 운영하며 세부 약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②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③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④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⑤ 제5조(손해의 통지)
- ⑥ 제6조(손해방지의무)

- ⑦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와 보험회사의 해결)
- ⑧ 제8조(대위권)
- ⑨ 제9조(조사)
- ⑩ 제10조(계약내용의 교환)
- ⑪ 제11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회와 보험회사의 책임범위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와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스사용자 :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 사고

【용어의 정의】

가스사용자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고압가스 저장을 허가받은 자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를 허가받은 자 및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또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를 말함
가스사고	-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함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와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의 승

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의 제2호의 절차를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와 보험회사의 해결) 제2항, 제3항의 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6. 증권상 보상 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공제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와 보험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피해자의 과실 및 직업, 연령, 수입 등을 고려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별표 1]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애(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별표 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산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액의 합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공한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에 대한 회의 보상한도는 매 사고당 100만원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와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 ⑤ 피공제자(공제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손해
- ⑥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애(장애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 ⑦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 ⑧ 피공제자(공제대상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가중된 손해
- ⑨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및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⑩ 제9항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⑪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 ⑫ 가스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 ⑬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물 또는 작업 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손해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와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다른 의무보험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을 경우 제9조(공제금의 부담)를 따릅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타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을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의 승인을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소송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소송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에 그 승인을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와 보험회사의 해결) 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와 보험회사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와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와 보험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와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와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와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와 보험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대위권) ① 회와 보험회사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와 보험회사는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와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와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와 보험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와 보험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9조(조사) ① 회와 보험회사는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사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와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와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회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와 보험회사는 공제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 지표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 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와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보상한도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11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11조(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 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본회 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 내에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회가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 지급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항의 서류 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공제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 보험인 경우에도 같

습니다.

② 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의 제1항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와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회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와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14조(약관의 해석) ① 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17조(준거법) 이 약관 및 제10조(회와 보험회사의 책임범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상해급별 지급공제금액

상해급별	지급액	상해부위
1급	1,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분쇄성골절 3.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 시간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8. 경골하 3분의 1부 분쇄성골절 9. 3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 이상인 상해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손상이 심해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 밖에 1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8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박골분쇄성골절 2. 척추체의설상압박골절이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탈구 6. 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관절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75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 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골절 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7. 어깨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한 어깨골 완전적축술이 적용되는 상해 8. 경골과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9. 족근골척골간 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 연골파열과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밖에 3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p>4급</p>	<p>7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퇴골과 부골절 2. 경골간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6. 상박골외측상과 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이상인 상해 9. 안구파열로 적축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p>5급</p>	<p>5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골반골의 중복골절 (말가이그니씨 골절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인대파열 4. 족중골골절 5. 상박골간부골절 6. 요골원위부골절 7. 척골근위부골절 8. 다발성능골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족배부근건파열창 10. 수장부근건파열창 11. 아킬레스건파열 12. 2도화상 등의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 이상인 상해 13.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그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p>6급</p>	<p>4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2. 대퇴골 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 종족골골절 5. 치골·좌골·장골의 단일골절 6. 단순슬개골골절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절을 제외한다)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주두골절 10. 다발성 중수골골절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2.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13.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5. 그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p>7급</p> <p>25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의 상지장관 골간부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3. 상박골절상과 부골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 족관절탈구 8. 2도 화상 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p>8급</p> <p>18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박골상과부신전골절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골절 5.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6. 비골(다리)간부골절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늑골골절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0. 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p>9급</p> <p>14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척추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탈구 등 수근골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골절 6. 수근골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족근골골절(거골, 종골은 제외한다) 8. 중족골골절 9. 족관절부염좌 10. 늑골골절 11. 척추체간 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 근육등) 손상이 동반 된 상해 12. 완관절탈구 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2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 완관절부염좌 5. 제불완절골절(비골<코>골절·수지골골절 및 족지골골절을 제외한다 6.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7. 그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골절 4. 수지골골절 5. 족지골골절 6. 뇌진탕 7. 고막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6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4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2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비 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예 :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 한하여 한급 높이 배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 2] 후유장애등급별 지급공제금액

등 급	지급액	신체장애
1급	8,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7,2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6,4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5,6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p>5급</p>	<p>4,8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p>6급</p>	<p>4,0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컷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p>7급</p>	<p>3,2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에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p>8급</p>	<p>2,4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p>9급</p>	<p>1,8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p>10급</p>	<p>1,5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p>11급</p>	<p>12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p>12급</p> <p>10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전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p>13급</p> <p>8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p>14급</p> <p>5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치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비 고

1. 신체장애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급 높게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었다함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